

# 2023년도 제26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19(목), 10:00 ~ 11:30
- 장 소: 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3명
  - 심의위원: 김경숙 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정숙 위원, 김춘식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손수호 위원, 심동섭 위원, 정경오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W) 위원,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위원장
2. 전차(제2023-21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의위원
3. 안건상정 ..... 위원장
  - 보고안건 제1호: 2023년도 3분기 주요 심의 현황
    - ※ 안건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선화 선임
  -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선화 선임
4. 폐회선언 ..... 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보고안건

#### ○ 제1호: 2023년 3분기 심의실적 및 주요 심의사항

##### - 주요내용

- 2023년도 3분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 2. 의결안건

#### ○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

##### - 전차 회의록(제2023-212 확인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함.)

-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계정 정지 시정권고 의결안건의 회의록 및 안건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 제1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23-199184호~199188호는 제2023-205회 제1분과위원회(2023. 8. 14. 개최), 안건번호 제2023-199189호~199190호는 제2023-215회 제3분과위원회(2023, 8. 30. 개최)에서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지식인에서 악보를 게시한 사안임.

#####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23-199184호~199190호은 ●●● 지식인에서 이용자

들이 게시글 혹은 답변글로 악보를 게시한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 2023-199184호~199187호는 상업시장에서 판매중인 악보와 상이한 점, 개인이 직접 채보한 악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3-199188호~199190호는 상업시장에서 판매중인 악보와 동일해 보이는 점, 다만 상업적인 목적은 없고 비상습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경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6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212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김경숙 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4~18쪽 위원명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관련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계정 정지 안건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권리자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저작물명, 위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 보고안전 제1호: 2023년 3분기 심의실적 및 주요 심의사항

- 김선화 선임이 2023년 3분기 심의실적 및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o 의결안건 제1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등이며, 시정권고 이행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임. 위원님들께서는 각 당사자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사항 없음.
  
- 김경숙 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안전번호 제2023-199184호~19919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지식인에 악보가 게시된 사안 총 7건임. 안전번호 제2023-199184호~199187호는 현재 상업시장에서 동일한 악보는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안전번호 제2023-199188호~199190호는 상업시장에서 동일한 악보가 판매 중임.
  
- A 위원: 1분과에서 심의대상 안전을 전체위에 올린 목적은 악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것임. 악보에 대해서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주곡이든 노래를 부른 음원이든 저 악보만 가지고 재현 가능한 수준의 악보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심의대상 안전 정도면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전체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한 것임.

- B 위원: 과거에는 채보를 했는지 아니면 보고 베낀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악보들이 안전으로 상정됐었음. 최근에는 합법 사이트 워터마크가 찍힌 악보가 올라오고 있어서 악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실제 채보를 하는 경우, 피아노곡이면 피아노, 바이올린곡이면 바이올린 이렇게 하나의 악기만 연주 가능한 이런 식으로 채보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원저작권자가 원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위원님도 계신 것 같음.
- C 위원: 심의대상 안전 중 일부는 포크송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완전한 악보일까라는 생각이 듦.
- A 위원: 미디 파일이 심각함.
- B 위원: 그러함. 미디 파일은 완전 재생 가능한 곡이어서 침해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D 위원: 종합의견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관계를 저희는 시정권고 처분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행정지도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음.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행정지도지만 실질적으로 처분과 같은 그런 강제력을 느끼고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 그렇다고 봤을 때 강제력을 일부 느끼게 하는 시정권고를 이런 경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임. 그래서 저는 종합의견의 부결 의견에 동의

함.

- B 위원: 오늘 심의에서는 모든 안전을 부결할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경우로 가결을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임.
  
- 김선화 선임: 악보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것과 비교해서 동일하면 가결을 해주셔도 되는데, 소폭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사실 보호원에서 소폭 변경인지, 어느 정도로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심의대상 안전 중에는 특히 게시 기간이 오래된 것들도 있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
  
- E 위원: 현재 게시중인 악보는 합법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악보와 완전히 동일한지?
  
- 김선화 선임: 일부는 게시된 지 오래 되었지만, 합법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악보와 동일함.
  
- F 위원: 심의 대상 안전들은 모두 저작권 침해, 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맞음.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시정을 권고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함. 예전에 ◎◎◎라는 곳에서 가사를 책에 실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음. 즉 포털에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가사를 가져다가 사용한 사안으로도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침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사진 한 장 가져다 쓰고 뭐 이런 것도 문제를 삼는

데, 어디까지 시정권고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악보니까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는 있을 것 같고, 일부만 올려놨는데 그런 것까지 관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임.

- G 위원: 혹시 악보 판매 사이트가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가 있는가?
- 김선화 선임: 출판권, 악보 전송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음.
- G 위원: 출판권을 갖고 있으면서 전송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인가?
- 김선화 선임: 음원에 대한 권리는 확인되지 않음.
- A 위원: 제 의견은 최소한 음원과 유사한 수준의 음악을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의 악보라던가 나아가 미디 파일등은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심의 대상 안전과 같은 형태의 것은 하지 않는 게 적합하다고 봄.
- E 위원: 음원하고 악보를 비교해서 음원이 더 많은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고 악보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 수준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해서 저는 ○○○○ 같은 합법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와 동일한 악보를 복제·전송하고 있다면 요약표 기준에 있는 가결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머지는 판단하기에 여



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가결하지 않고 권리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H 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 판매가 이미 중단된 악보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중의 이용을 위해서 허용할 것인지?
  
- 김선화 선임: 판매가 중단된 건은 특정 악보 사이트에서 중단된 것으로 그렇다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고 저작권은 여전히 창작자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맞음. 그리고 게시 기간은 일부 분과에서는 오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음. 그렇다고 기간을 10년으로 딱 자르거나 특정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음. 영화 같은 경우 재개봉도 하고 있고 오래된 영화들도 합법 시장에서 계속 소비되고 있음. 그런데 게시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만약 웹하드에 우리가 모니터링 못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안할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 따라서 약간 달리 봐야 될 부분임.
  
- B 위원: 클래식, 포크송 같은 음원의 경우 A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보 그대로 연주하고 재현이 되는데, 최근 대중 음악은 악보 자체가 없고 녹음 자체가 악보나 마찬가지로 보니까 귀로 듣고 연주하고 있음. 그리고 악보가 애초부터 클래식처럼 총보가 있으면 그대로 재현되니까 악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음원은 사실 애초에 악보를 만들지 않고 연주하면서 음악을 만들어서, 내가 저 음악을 듣고 무슨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이걸 책으로 만드는 것임.

- I 위원: 기존 심의 기준을 보면, 판매중인 악보와 동일하고, 전체 분량인 경우에 가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려면 판매중인 악보와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해야함. 영화나 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악보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한군데 음계만 달라지면 원본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임. 그래서 실제 판매중인 것과 동일한 건지도 전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임.
- 김선화 선임: 악보 사이트 중 합법 사이트는 몇 개 없으며 사이트에 접속하여 샘플로 보여지는 한, 두 페이지 정도 보고 거기서 동일하면 동일한 걸로 판단하고 있음.
- G 위원: 그러면 동일 여부를 악보 공장이나 이런 합법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보고 그걸로만 판단을 하겠다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음.
- 김선화 선임: 그러함. 다만 합법 사이트 중 어느 한 곳과 동일하면 동일하다고 보고 있음.
- G 위원: 약간의 변형인 경우 우리가 저작권도 그러면 복제했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 김선화 선임: 그 약간의 정도까지 보호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동일한 것을 찾다가 약간 특이하거나 다른 점이 발견되면 동

일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G 위원: 악보는 일반인의 경우 아무런 필요가 없음. 최소한 피아노를 공부한 사람이나 전문가들한테 필요하므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B 위원: 합법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악보의 종류에는 성가곡이 있음. 성가곡과 클래식이 거의 같아서 악보를 낼 때 총보 형태로 출판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큼. 그래서 성가곡 악보가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면 일반인들은 성가곡이니깐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와 출판하는 곳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게 발생하는 것임. ★★★를 이용해 음원을 듣고 만든 비트를 봤는데 오히려 채보한 곡이 비트가 정확하고 ■■■■에서 판매했던 악보가 틀린 경우가 있었음. 그래서 음원을 그대로 ■■■■에서 채보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님을 발견하였음. 대중음악은 일정한 기준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저의 의견임.
- 김선화 선임: 심의안건 중 일부는 합법 사이트 로고가 있는 걸로 볼 때 예전에 합법 사이트에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음. 현재 기준으로는 합법 사이트에 동일한 악보가 없으며 합법 시장 존재 여부가 확인이 안됨.
- E 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음. 작곡가가 악보를 악보 판매 사이트에 주는 것도 아니고 ☆☆☆에 주는 것도 아닌데 ☆☆☆은 음원 계약을 맺은 것임.

- A 위원: 악보 파는 걸 보고 오선지에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님.
- D 위원: 만약 ☆☆☆에 물어본다면 안 된다고 할 것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을 전제로 두어야 함.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부결됐다고 해서 사용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그리고 시정권고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런 걸 다 고려했을때, 종합의견에도 나왔지만, 저작권자가 이익을 본다든지, 신고자가 저작권자라면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임. 종합의견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판단했을 때 심의위원회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서 부결이라는 것이지 이걸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임. 가결보다는 경고를 한번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 김경숙 위원장: 그러면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심의대상 안전에 대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음.
- 김선화 선임: 검토보고서의 기준표를 다시 말씀 드리면 안전번호 제 2023-199184호~1999187호는 합법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악보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며, 일부 분량 게시도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 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부결 의견이며, 안전번호 제2023-199188호~199190호는 합법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악보와 동일하기 때문에 가결 의견임.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3-199188호~199189호의 경우 게시일이 굉장히 오래전임.

- 김선화 선임: 해당 안전들은 2014년에 게시된 답변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며 안전번호 제2023호-199190호는 현재 삭제가 되어서 가결해 주시면 경고의 시정권고만 나가게 됨.
- J 위원: 게시기간이 일률적으로 길다, 짧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D 위원: 제가 가결 의견이라고 말씀 드린 것도 경고의 가결의견으로 마무리하고 일률적으로 정했으면 함.
- E 위원: 저도 안전번호 제2023-199188호~199190호의 경우에는 합법 시장이 있지만 삭제 조치를 하기엔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김선화 선임: 그러면 향후 분과위에 합법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약보의 전체 분량이 올라간 게시물에 대해서도 경고 가결을 하게 됨.
- K 위원: 불법임이 분명한데, 보호원에서 경고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 E 위원: 불법이라고 항상 시정권고 가결을 한 것이 아니고 상업적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고 선택도 많이 해왔음.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예컨대 동일한 것을 게시하고 있다면 삭제·전송중단을 가결할 수 있겠지만 해당 사안은 경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

각함.

- D 위원: 경고 가결의 의미는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부결과 같이 권고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님.
- 김선화 선임: 오늘 전체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앞으로 분과위원회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됨. 그리고 상업적 목적 말씀해 주셨는데, 악보 게시물의 대부분은 비상업적 목적이었음. 악보는 대부분 팬심으로 공유하거나, 노래가 좋아서 게시하나, 연습곡 목적으로 게시하는 등 상업적 목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 보면 안전번호 제2023-199190호는 전송 중단할 수 있는 게시물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고 가결이 되며 안전번호 제2023-199188호~199189호는 합법 사이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결을 하는데, 안전번호 제2023-199188호는 게시 기간이 오래 되었지만, 그 게시 기간을 저희가 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음.
- J 위원: 시효가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상당한 걸 누가 판단할 것인지?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 김선화 선임: 경고 가결을 해주시는 이유에 따라서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도 그걸 참고해서 의결을 하시게 됨.
- A 위원: 하나 첨언을 드리면 저작권이 있는 사진 또는 예술 작품을 온전하게 찍어서 내 게시물에 올렸다고 그걸 제재 할 수 있느냐는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악보가 아닌 사진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해 질 수 있음. 즉 내가 온전한 사진 하나를 게시물에 올렸다고 해서 제재를 잘 하지는 않음. 상업적 목적이라든가 다른 요소를 같이 판단해야함.

- I 위원: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제 생각은 현재 판매하고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아주 작은 가치지만 판매할 목적이라면 가결을 하는 것이 맞고, 판매 중인 것이라도 비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고를 할 수 있을 것임.
- 김선화 선임: 악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안전 중에 딱 한건이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부결되었음.
- B 위원: 지금 올라온 안전들은 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보임. 그렇게 보면 전체 분량을 다 이용하더라도 비상업적 이용인지 혹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가결로 기준을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 게시기간, 분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D 위원: 만약에 기준을 정한다면 저는 경고 가결 의견인데, 상업적 목적과 상습성, 분과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고의성, 목적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정도를 추가해서 이 정도이면 가결로 하고 나머지는 경고의 가결로 하는 결로 결론을 내렸으면 함.
- 김경숙 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99184호~199190호중 안전번호 제2023-199184호~1999187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99188호~199190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99184호~1999187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99188호~199190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 5. 폐회 선언

- o 김경숙 위원장이 제26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6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29 .

위원장 김경숙

위원 김민아

위원 김정숙

위원 김춘식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손수호

위원 심동섭

위원 정경오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

위원 홍승기